

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(3차)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- 지원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판로개척, 제품생산 **공급가액 소비비용의 60% 지원(단위별 기업당 연 1회)**
 - **연간 2천만원 한도 내 신청(선정은 연 기업당 최대 3건)**, 기업 자부담 40%, 부가세 및 초과분은 기업부담

분야	단위	지원사업	지원내용	참여 市	구분
창안 개발	국·내외 산업재산권 출원_택1	· 국내상표출원 : 건당 25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200만원)	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 (화성 X)		사후신청 (26.1.1.이후 취득, 참가 지출 완료분 인정)
		· 국내디자인출원 : 건당 35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280만원)			
· 국내특허출원 : 건당 130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520만원)					
· 실용신안출원 : 건당 90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360만원)					
· 해외상표출원 : 건당 250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500만원)					
· 해외특허(PCT)출원 : 건당 250만원 이내 (총비용의 60%, 최대 500만원)					
판로 개척	국·내외 전시박람회_택1	· 최대 300만원 (총비용의 60%)	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 (화성 X)		
		· '국내' 에서 개최되는 전사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			
		· 최대 500만원 (총비용의 60%)			
		· '해외' 에서 개최되는 전사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			
제품 생산	시험분석 지원	· 시험분석 : 최대 200만원 (총비용의 60%) · 국가공인 전문시험, 분석기관,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에서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(기관) 으로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이 완료된 기업	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 (화성 X)		

* '26. 1. 1. 이후 취득·참가 지출 완료분 인정(※ 증빙 : 출원번호 통지서, 시험성적서, 국내외전시회 참가 및 비용 지출 완료 등)

-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2026년 9월
- 시·군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 됩니다.
 - 모집 마감일(9월 7일 월요일) 전에 신청서 접수완료 적극 추천드리며, 마감일 경기기업비서 접수 사이트

- 사업비 출원 시·군 소재 **2025년도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**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- *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-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**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원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**
-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 : 수원시, 오산시, 평택시, 안성시
-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- 지식기반서비스업 : 「산업발전법 제8조 2항」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(**별표1 참조**)

< 참고 : 사어은여 귀여 / 사.그 현환 >

남부권(4) : 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

- 국고의 리즈 신청기연의 다음 각 호의 일 허시에 해당한 경우 신청서적 대상에신 개입됩니다.

- 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②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-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- ⑥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(**별표2 참조**)
- ⑦ 민원야기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


신청방법

- 접수기간(3차) : 2026. 8. 24.(월) 09:00 ~ 9. 7.(월) 18:00 까지
- 신청방법 : 사업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'[경기기업비서](http://www.eqbiz.or.kr)' (www.eqbiz.or.kr) 및 부속서류 업로드
- 경기기업비서 접속 - 남부권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- 단위 지원사업 클릭 -

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판정서류(일제) 업로드 → 온라인 신청하기(완료)

Figure 1. The effect of the number of trials on the number of correct responses. The number of correct responses (Y-axis) is plotted against the number of trials (X-axis). The data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rials and the number of correct responses, with a linear regression line fitted to the data.

필수	
가점 항목	① 단위사업별 신청서 (온라인 작성)
	② 단위사업별 지원금신청서
	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(온라인 작성)
가점 항목	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(국세청 발급)
	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(기업 자율 선택)
	⑥ 해당사업 견적서
가점 항목	⑦ 25년도 재무제표 (국세청 또는 세무서) * 25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, 24년도 재무제표와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제출
	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 (민원24 발급)
	⑨ 일자리 증가 (원천정수이행사항신고서 (2024년도, 2025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/ 국세청 발급))
가점 항목	· 공장등록증명서 (민원24 발급)
	·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

[illegible]

※ 세술서튜(

- ## 기타사항
- 신청 시 유의사항
-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으며, 기간 내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 됨
 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,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- 결산 등의 이유로 25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24년도 재무제표 및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 발급)을 함께 제출
 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 발급) 제출
 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체납여부 사전 확인 필요
 -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여부, 휴·폐업 확인을 위한 **사업자등록증명**(국세청 발급) 제출
- ※ 사업자등록증 불인정

✧ **고자드로즈의 바이저**

- 외주기업(대행업체) 선정 시 유의사항
 - 해당 기업과 계약 연관된 **어태치 조모**이 사원자드루즈에 명시된 기업은 **이즈기어(대행기업)**으로 선정하여야 함

- 사업자 본인과 민법

- **지원결정 사항의 변경**
 - **지원결정 변경**은 사전에 “**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**”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
 -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,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

- 변경은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, 선정된 지원과제 변경은 불가함

(다만, 총 소요비용이 증액 반영된 경우에도 기 지원결정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음)

© 2012 Blackwell Publishing Ltd
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비용 증빙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(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-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- 사업자가 총 소요비용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,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신청기업 지정계좌로 지원금 지급
 -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(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)
 - (법인)카드 사용 시 (법인)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를 제출

- 지원금 지급 시 **처음미만 적사**(처음부터 적사) → **처음부터 적사**

-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 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

- 운영규정'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③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□ 문의처 (주소 : 안성시 비룡5길 30 (석정동)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102호 남부거점센터)